

會計責任에 관한 社會的 認識

A Social Recognition on Accounting Responsibility

卞 桂 心*

(Pyeon, Kye Shim)

目 次

- I. 序論
- II. 社會的 責任의 意味
- III. 會計次元에 의한 責任의 認識
- IV. 責任問題와 會計原則
- V. 社會的 責任과 會計의 役割
- VI. 結論

參考文獻

* 尚志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碩士課程(特別會員)

ABSTRACT

Araditionally, a business enterprise was a unit of individual economy which looked after it's own interesting. This business philosophy gave not only much wealth and advantages to the society but also caused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pollution, inferior goods, false advertisements, unreasonable packing and so on. Because of this criticism, it is necessary for us to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and to make an accounts report about it.

- A business should examine itself that, for the long run, the philosophy, looking after its own interesting by means of unreasonable economical actions, is unfavorable to the business and be aware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t is important that the business accounting should identifying, measuring and communicating on the former business actibities, but in order to help the persons interested in the business in the with their interests control and their appraising the degree of of social contribution, its object should be the embodiment of social justice by giving the economic intelligences.

We con get at the root of formation of corporate social accounting on this point, that it to say, we can lay it down that business activities deal with the affairs which are measured, reported, and appraised from the social view points. Given a definition of this corporate social accounting according to the general standard of business accounting, I think the persons interested in business can get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s to make a reasonable decision from the social view points. Set forth the responsibility of accounting based on this, it is very meaningful to study in the social recognition.

I. 序論

1. 研究의 目的

從來의 企業은 營利를 目的으로 商品이나 서비스를 生產 또는 販賣하는 生產經濟의 單位體이며 利益을 極大化 하려는 個別經濟의 單位體였다. 企業은 商品과 서비스의 生產으로 利益極大化를 도모하는 社會的 機關으로서 그 業務를 遂行해 왔다고 볼 수 있다. 企業의 이러한 利益極大化 過程은 이 社會에 많은 풍요로움과 便益을 가져다주어 그 貢獻은 簟로 至大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利益極大化의 過程이 우리 社會에 언제나 正의 影響(plus impact)을 미치는 것은 아니였으므로 過去 企業의 意味는 變化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企業은 利益極大化라는 目的 아래 그 成長過程에서 풍요로움과 동시에 公害問題를 비롯한 買店賣惜行爲, 土地投資行爲, 不良商品, 虛偽廣告, 過大包裝 등과 같은 많은 社會問題를 야기시켜서 우리社會에 負의影響(minus impact)을 미치게 하였다. 따라서 從來 利益極大化를 위한 企業의 行動은 이제 우리 社會에 고마움의 存在로서 보다는 社會의 問題兒로서 批判의 소리를 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批判의 소리는 企業의 社會的 責任遂行과 그 報告의 必要性을 要求하고 있다. 企業 스스로도 장기적인 眼目으로 보아서 不合理한 經濟行爲에 의한 이익극대화라는 哲學이 企業에 不利하다는 것을 反省하게 되어 企業의 社會的 責任問題를 自覺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反省과 自覺에 의하여 企業의 會計도 從來 企業活動의 經濟的 情報를 識別하고 測定 및 傳達하는 것에서 企業의 利害關係者에게 利害調整과 社會的 貢獻度내지 社會的 業績評價를 할 수 있도록 經濟的 情報를 提供하여, 궁극적으로는 社會正義(social justice)를 實現하는데 그 目的을 두게 되었다. 여기에서 企業社會會計 生成의 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企業社會會計는 企業活動을 社會的인 觀點에서 測定 및 報告하고 評價하는 問題를 다루는 것으로 說明될 수 있다. 이러한 企業社會會計의 性格을 一般企業會計의 目的에 비추어서 定義한다면 社會的인 觀點에서 企業의 利害關係者인 會計情報利用者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有用한 會計情報 to 提供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會計責任을 論議함에 있어서 그것이 社會的 基礎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論文에서 研究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 및 範圍

企業社會會計 내지 社會責任會計의 體系化된 理論構造는 아직 定立이 되지 않고 있는 實情에서 本 研究의 方法은 學術論文에서 部分的으로 論議된 理論이나 文獻 등을 中心으로 理論的 考察에 限定하였다. 本 論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第1章에서는 序論으로 研究의 目的과 範圍를 訂立으며, 第2章에서는 社會的 責任의 意味와 背景을 說明하였다. 第3章에서는 會計次元에 의한 責任의 認識에 관한 것이고, 第4章에서는 責任問題와 會計原則을, 第5章에서는 會計의 責任과 會計의 役割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그리고 第6章에서는 要約 및 結論을 내렸다.

3. 社會會計의 背景

一般的으로 社會會計(social accounting)은 國民所得會計와 企業社會 會計로 區分되는데 前者는 經濟會計 또는 巨視會計라고도 하며 後者는 社會責任會計 또는 社會監查라고도 불리워 지고 있다. 國民所得會計는 經濟學的 觀點에서이고 企業社會會計는 會計學的 觀點에서 主로 論議되는 分野로 보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는 會計學에서 이들을 모두 그의 領域으로 重要視하고 있으므로 社會會計는 두 領域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의 分野가 社會(society)에 직접 관련된 問題를 다룬다는 點 때문이다.

國民소득會計는 社會全體的 觀點에서 經濟的 會計를 다루는 것이고 企業社會會計는 企業會計를 중심으로 企業과 社會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國民所得會計는 주로 國民所得會計에서 作成되는 것이 會計報告를 中心으로 分類하는 것이고 企業社會會計는 企業의 經濟的 觀點 또는 社會責任에 關係되는 分野를 다루고 있다.

머피(M. E. Murphy)¹⁾는 社會會計라는 用語를 經濟學者인 힙스(J. R. Hicks)²⁾에 의하여 出刊된 冊에서 最初로 使用하였고 이 당시에 使用된 社會會計라는 用語는 물론 國民所得會計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企業社會會計는 크게 社會責任會計와 人的資源會計로 나눌수 있고 社會責任會計는 더욱 細分化하여 環境問題와 消費者問題 등으로 나누고 있다. 企業社會會計는 이

註 1) Mary E. Murphy, Social Accounting, Mordern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Inc., 1966.
P.491.

註 2) J.R. Hicks, The Social Framework, An Introduction to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42.

러한 內容때문에 社會會計의 社會經濟會計 또는 社會責任會計로 불리워지게 된다. 이 分野에 대하여 에스테스(R. W. Estes)³⁾는 企業社會會計는 經濟的 實體의 社會에 관한 影響과 活動을 다루는 것으로 이에 關聯된 會計情報의 判定과 情報를 다루며 經濟的 實體의 內外的 問題를 다루는 것이다. 이 定義에서 企業社會會計는 社會에 關聯된 ① 企業의 活動과 報告問題를 다루며 ② 經濟的 實態의 內外的 問題를 對象으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企業의 社會的 成果에 대한 判定과 報告에 대한 要求때문에 企業의 目的과 會計目的은 變化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企業會計에 있어서 社會的 目的을 考慮하여 會計를 進行해야 한다는 會計目的의 變化는 AICPA에서 社會的 目的을 考慮한 會計目的을 強調한데서 그 重要性을 찾을 수 있다.⁴⁾ 이러한 企業社會會計는 企業活動의 社會的, 人間的, 環境的 側面을 다루고 있게 되므로 그 目的도 당연히 이러한 側面을 考慮하여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體系的으로 企業會計의 目的是 利潤極大化에 있었지만 企業社會會計에 있어서는 社會的 目的을 考慮한 利潤極大化 모두 人間과 社會에 奉仕하면서 利潤極大化를 達成한다는 目的으로 企業目的이 修正되어야 한다. 會計目的의 變化와 함께 흔히 企業의 目標로 생각되어 온 利潤極大化의 內容도 企業社會會計에서 修正되어야 한다.

傳統的 會計의 目的是 利潤極大化를 追求하며 財務諸表는 企業資源에 대하여 所有主가 委任한 受託管理 責任에 따라 報告하는 受託目的이 된다. 現行의 財務會計의 目的是 情報利用者의 經濟的 意思決定에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는 데 있다. 企業社會會計의 會計目的은 에스테스⁵⁾에 의하면 (1) 大衆의 이미지 改善 (improved public image)을 誘導하고 (2) 經營者가 社會報告書를 作成토록 함으로써 企業의 社會的 影響과 企業이 遂行해야 할 社會的 活動을 弘報, 學習, 評價 함으로써 (3)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認識, 遂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企業目標와 會計目的의 變化는 企業의 社會性에 대한 強調와 企業에 대한 社會의 壓力 그리고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認識등으로 漸次 重要視되는 傾向이다.

企業社會會計의 範圍는 企業의 社會的 成果에 關聯된 會計分野로서 企業을 中心으로 發生하는 經濟社會的 問題와 社會的 責任에 關聯된 問題 또는 社會的 觀點에서 企業의 成果를 評價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大體的으로 環境問題와 消費者問題, 地

註 3) R. W. Estes, Corporate Social Accounting, John Wiley & Sons, Inc., 1976, P.3.

註 4) AICPA Study Croup,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1973.

註 5) Ralph Estes. op. cit., p.151.

域社會問題 및 人的資源問題 등이 包含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企業社會會計에서는 傳統會計에서 使用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새로운 概念이 사용되고 있다. 즉 總利益은 傳統會計에서 理解되고 있는 것과 달리 企業의 社會的責任을 고려하여 算出되는 것이고 社會原價와 社會效益 그리고 社會 剩余와 같은 새로운 概念을 定義해야할 必要가 있다. 프리드만(M. Friedman)⁶⁾은 企業은 概念的으로 清潔한 利益(clean earning)을 얻어야 한다고하는 論理를 主唱하였다. 그의 利益概念은 社會的 責任이 고려된 것이다. 그는 企業이 社會에 대하여 好意的 이미지를 創造한 것과 같은 方法으로 好意的 雾圍氣를 創造함으로서 利益을 取得하는 社會的 活動을 企業이 遂行할 것을 主唱하고 있다. 이와같은 清富의 概念은 抽象的인 것이라는 하지만 企業利益에 대한 새로운 思考가 注目된다. 결국은 企業社會會計는 企業에 있어서 社會的으로 目的適合한 活動(society relevant activity)을 對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社會的 責任의 意味

社會的 責任에 대한 研究는 經濟學的, 法學的, 社會學的, 政治學的 觀點에 대한 것이며, 對象이 될 會計責任에 대한 研究는 會計學的 觀點에 관한 것이다.⁷⁾

社會的 責任의 概念은 會計責任의 概念보다는 外延的으로 또는 內容的으로 더 넓고 더 깊은 것이라고 理解하고 있다. 企業責任의 概念도 이러한 責任의 概念보다는 狹義이고 이것은 責任을 企業에 限定하고 特定化한 것으로 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會計責任에 있어서는 責任을 計定에 表明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즉, 會計責任은 Account responsibility라고 하는 英語에 該當하는 것이고, 責任中에서 會計構造에 吸收된 것으로 理解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會計學的 考察에 있어서 責任을 論할 때 그것은 Account responsibility에 대하여 論議 하든가 또는 그렇게 되어야 할 責任에 대하여 論議하고 있는것이 될 것이다. 責任이라는 概念에 대한 規定은 민츠와 코헨의 共著에서 興味있는 說明이 提示되어 있다.⁸⁾

註 6) Milton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n to Increase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 19. 1971.

註 7) 中村一彦, 企業の 社會的 責任, 法學的 考察, 同文館, 1977. pp.11-22.

註 8) Morton Mintz & Jerry S. Cohen, Power, Inc, The Viking Press, 1976, Introduction XIX, XX.

그들은 그들의 共著에서 페리클레스 時代(The periklean age)의 아테네(C. 490-429 B.C)에서 民主的 責任으로서의 어색한 움직임이 發生한것등 責任概念의 起源을 調査하였는데 政府의 責任은 國家가 個個人의 行爲에 刑罰을 賦課하든가 또는 政府가 政策遂行에 대하여 責任의 次元과 合致하는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⁹⁾ 따라서 민츠와 코헨은 Accountability와 Responsibility의 同義性을 認定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國會가 行政府를 支配하는 傳統은 1688년의 英國革命과 더불어 始作되었으나 真正한 Public accountability 즉, 國民은 엘리트나 왕보다는 優秀한 公益의 判事라고 하는 正當한 信念에 基礎한 國民에 대한 責任을 進水시킨 것은 美國革命의 榮光이었다고 說明하고 있다.¹⁰⁾ 이러한 美國革命의 榮光으로서의 Public accountability는 最近에 있어서 社會的 責任論의 歷史的 根源이라고도 볼수 있다.¹¹⁾

이들은 責任의 概念을 歷史的으로도 그리고 文獻的으로도 確認하는 가운데 Public accountability가 民主政治의 基礎에 놓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說得하려고 하고 있다. 그때의 가장 重要한 問題로서 指摘되고 있는 것은 價值觀의 多樣化이다. 특히 正反對의 論理的 價值意識이 存在하고, 論理的 責任에 대해 共通認識이 成立하지 않는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는 것은 實로 意味가 깊다. 共通한 論理的 價值意識이 成立하지 않는 경우에는 Public accountability에 있어서도 共通의 價值尺度가 되는 責任內容을 確立한다는 것도 极히 困難하다. 價值意識으로서의 Public accountability를 法의 世界에 있어서 確立하는 Regal accountability에 까지 成熟시키기 위해서는 權利意識의 社會的 確立이 必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犯罪로 하는가의 具體的 內容에 대한 規定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는 君主制度에 있어서 民主制度로서의 移行을 前提로 하여 民主社會의 責任을, 國民을 社會의 主體者 내지 主權者로 하는 國民에 대한 責任의 成立을 美國革命의 榮光으로서 들고 있으나 Public accountability를 이러한 民衆의 次元에서 社會的 要求 및 社會的 責務로서 理解한다면 이러한 責任의 確立에 있어서 가장 效果的인 方法은 美國에서는陪審制度를 採擇하는데 볼 수 있다. 특히 그것은 賢者의 裁判은 아니고 愚者의 裁判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陪審制度의 採擇은 賢者인 判事와 國民에 위한 判斷과의 合致에 어느 程度의 社會的妥當性이 期待되고 있는 것이

註 9) Richard McKeon, *The Development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P. 5.

註 10) Thomas Jefferson on Democracy, ed., Saul K. Padover, P. 22.

註 11) D.D. Renaissance, the Dilemma of Accountability in Modern Government, ed. Bruce Smith, New York, Macmillan, 1971, p. 312.

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國民이 責任의 確認에 參加하는 하나의 形態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美國에 있어서 Public accountability의 成立과 機能을 理解하려고 할 경우陪審制度의 그 實效를 期待하고 社會的 公正의 維持의 役割이 구해지고 있는 것에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III. 社會次元에 의한 責任의 認識

責任의 問題를 會計의 次元에서 檢討할 경우 이러한 法的制度와 機能이 具體的으로 責任의 確認에 깊이 關係를 갖는 것은 無視할 수는 없다. 다시 민츠와 코헨에 의하면 不適正한 表示의 事件(1968)에서 被告人 3명의 公認會計士가 陪審員의 裁量에 의해 有罪判決이 된 것을 들고 있다. 이 事件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AAP)에 準據하고 있는 것은 꼭 充分하고도 公正한 公示(full and fair disclosure)를 滿足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點에 대해 論議된 것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이경우被告를 有罪로 몰아넣은 큰 힘은 『財務報告는 公正하게, 表示되어 있지 않는다고 裁判하였다』¹²⁾ 하는 것은 注目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또 同書는 National Student Marketing의 事件에서도 被告를 有罪로 하는데에 이르러서 陪審의 役割이 指摘되고 있다. 本 件은 實實에 包含되어있는 것을 無謀하게도 無視하여 行하여진 監查라고 判定한 것에 있다.¹³⁾ 라고 當時는 引用하고 있다.

責任의 法的確認이 이와같이 陪審의 役割에 많이 依存하고 있는 것은 實로 美國의 이지만 選出된 陪審員에 의해 이러한 重大한 決定이 行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理解하면 좋을 것인가. Public accountability의 真正한 意味와 그 社會的 機能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러한 社會構造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賢者에 의한 裁判에 대신하여 裁判을 중시하는 美國社會構造 中에서 發生한 Public accountability의 概念에는 韓國의 理解를 促求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責任을 確立하는 方法 속에서 『Public』의 本來의 意味를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論理的 價值意識의 多樣性을 前提로 할 때 論理的인 責任의 一義的인 決定을 함에 있어서 困難함을 느낄 때 이러한 陪審制度는 巧妙히 回避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多數決 社會의 數에 의한 問題解決法이 상당한 정

註12) Morton Mintz & Jerry S. Cohen, op. cit., P. 194.

註13) Ibid., p.197.

도로 볼 수가 있을 것이나 그 속에는公正을期하기 위한配慮가社會的理虧를 놓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一般的으로認定된會計原則에準據하는會計實踐에 대하여 그것을超越한公正한價值判斷이會計職業人을有罪로몰아넣는경우가있다는것은會計의對象인責任에대한會計專門가가裁判을함에있어서강하게影響을미치지않을수가없다.우리들은여기에서責任의concept을지탱하고있는常識의意味와役割을再考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陪審에의한裁判은결국은常識에관한것이다.陪審은特定한事件에대하여專門家도아니고賢者도아니기때문에그判斷의基準은個人的인價值判斷의基礎를常識에구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말하자면健全한社會的常識에의하는것으로되기때문에複雜한論理는適用되지는않는다.또거기에賢者만에의한裁判에健全성이나타나는것이기도할것이다.우리들이여기에서確認하고자하는것은陪審制度의本質도아니고그의長·短點을말하는것도아니고責任의判斷이國民이裁判에基礎하고있다는點이다.그리고會計實務上의訴訟事件이陪審制度를통하여國民의裁判에 의해判決되었다는것은매우興味가깊다고생각한다.

IV. 責任問題와 會計原則

責任의認識에있어서一般的으로認定된會計原則이決定的手段이되지않는다고하는美國의事例는무엇을우리들에게示唆하고있는가에대하여會計原則에의한會計實踐의構築에는數많은障礙的要素가包含되어있다고하는不信과그會計實務의監查에대한形式主義의批判이위와같은訴訟事件이되어會計職業人の敗北로된것이나그때相關된것은眞實한會計라고一般的으로認定할수가있는가또는아닌가하는것이다.會計原則의虛構性을찌르는實際的인批判이國民에의해내려진다고하는會計原則의威信과會計實務의信賴性에대한도전이라고도볼수있다.그러나이것은會計原則의混亂을指摘하여보면價值裁判이라고一蹴할수도없다.

그러므로會計原則에있어서必要的것은一般的으로信賴에答할수있는充分한責任의認識을確立하는일이다.즉,Public accountability의認識이會計原則으로設定할경우에그基礎에놓여지지않으면안된다.그렇지않는다면會計原則의設定에관여하는會計職業團體라든가企業에있어서便利한道具를가져오는것이된다고하는誤解를낳을우려가생길것이고또한그러한會計原則에準據하여會

計處理가 行해 졌다고 하여도 앞서의 裁判過程의 例에서 볼 수 있었던 不幸한 結果를 招來하기도 한다. 브리로프는 그의 著書『More debts than credits』에서 美國의一般的으로 認定한 會計原則(GAAP)에 대한 意義를 表明하고, 이것을 巧妙히 가장한 會計責務(Cleverly Rigged Accounting Policy : CRAP)로 보는 傾向도 있다고 註記와 같이 말하고 있다.¹⁴⁾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AAP)을 會計策略(CRAP)이라고 바꿔 말하는 편이 좋다고 하는, 비꼬는 提案이 나오는 것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正當性에 대한 褒평이고, 그 批判의 뿌리는 充分히 責任을 表明할 수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意義에서 생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會計原則은 무엇인가, 누구에 대하여 어떻게 Accountable 인가의 認識을 基礎에 놓는것이 아니면 안된다. 따라서 會計原則을 設定하기 위하여는 責任에 대한 檢討가 우선 必要하다. 責任의 概念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힘을 行使하는 者에게 주어진 社會的 責任에 대한 것이고, 그 힘의 行爲에 責任을 지고, 그 意思決定의 理由까지도 說明하는 責任이라고 理解되고 있다. 이것이 利害關係者에 대한 當事者 責任으로서 確立해 가는 過程에 있어서는 그 社會的, 政治的 構造가 一定한 基本으로 된다. 그러므로 責任은 歷史的 相對性下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고, 또 나라에 따라 다른 認識이 成立한다고 하는 意味에서 空間的(地域的)인 相對性도 認定된다. 가령 美國과 같은 民權國家와 다른 主權國家와는 그 責任의 外延과 內包를 달리하고 그 뉴앙스의 相違도 있다.

責任의 概念이 政治, 經濟, 社會를 包含한 權力主體 또는 權能主體의 社會的 責任에 基礎하는 것이라는 것은 社會的 責任에 관한 社會的 合意를前提로 하기 때문에 이 概念이 成立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 Responsibility로서의 責任의 認識 즉, 會計責任의 認識의 基礎에도 Social Responsibility의 概念이 認定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Responsibility를 責任으로서 받아들이는 점에서 會計責任으로서 이 責任의 正當한나 理解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 責任과 會計責任과의 關係에 대한 것을 引用한다면 社會가 마치 골목의 食料雜貨商과 같이 自由企業經濟 속에서 廣範圍한 生活을 하고 있는 純粹한 私企業이라고 하는 幻想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社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社會에도 重大한 危險에 빠져든다¹⁵⁾라고 하는 우려를 表明하여 企業의 責任과 그 責任에 대하여 國際的인 企業環境 全般에 대한 配慮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즉, 單純히 國內에 있어서 利害關係者集團

註14) Abraham J. Briloff, More Debits than Credits, Harper & Row, Publishers, 1976, p.1.

註15) Abraham J. Briloff, op. cit., p.19.

의 擴大 및 世代的 影響으로서의 配慮뿐만 아니라 企業活動의 國際化 過程에 미치는 影響도 企業은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을 言明하고 있다.¹⁶⁾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會計責任을 맷는 基準은 論理的 價值意識에서 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論理的 價值判斷에 의해 企業行動에 대한 社會的인 것에서 부터 責任의 要求가 사람들의 內面에 形成된다. 그러한 內面的 要求에 轉化하고 社會로부터 企業에 대하여 그의 充足을 要求한다고 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社會的이라고 말하는 것은 企業의 外部環境인 社會的 要求로서의 性格을 갖는 것으로 擴大하고 있다.

따라서 論理的 責任이 Public accountability로서 具體的으로 社會的 要求로 轉化함으로서 이것을 Social responsibility의 責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Accounting responsibility에의 特定化가 생긴다고 하는 事理가 成立한다. 이러한 會計로서의 社會的 要請은 企業倫理로써 또는 社會의 嚴格한 要求가 Ethical investor인가 아닌가의 점에서 企業을 點檢하는데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事實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具體的으로 明白히 한 바와 같이 이것은 企業行動에 대한 하나의 社會的 規制力 을 發揮하고 있다. 企業倫理에 대한 嚴格한 要求는 “바람직한 社會”에 대한 社會的 理念을 反映하는 것이고, 이것은 歷史的 또는 相對的으로 變化하는 것이지만 企業의 公害에 대한 責任은 모든 나라에서도 法律的으로 많은 補完이 이루어 지고 있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은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時代의 論理的 價值意識을 反映한 社會契約의 受容까지도 强要하는 것이된다. 가령 최근의 美國에 있어서 “非核都市”宣言은 核兵器의 研究, 開發, 製造의 關與하는 企業과는 物質購入 등의 契約을 맷지 않고, 이를 企業이 投資도 認定하지 않는다고 하는 嚴格한 內容인 것이 報道되고 있다. 이것은 Ethical investor의 具體的인 概念內容을 表示하는 一例라고도 할 수 있다.¹⁷⁾ 會計의 社會的 基底가 이러한 論理的 價值判斷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會計原則의 形成에 있어서도 이것을 認識하고 있기 때문에 原則的 基礎로 해서 合意할 必要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社會的 價值判斷에 이르기까지 성숙했다고 보는 個人的 價值意識 즉, 平均的이고 支配的인 社會的 價值意識을 社會共通의 價值判斷으로서 認識하고 公益(common good)으로서 위치를 굳힐 必要가 있을 것이다. 社會的 責任은 企業行動 대하여 社會가 要求하는 責任이다.

責任에 대하여 企業은 Accountable이라고 한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Accounta-

註16) Ibid., p. 19.

註17) Ibid., pp.21-25.

bility는 責任의 義務라고 定義되어도 좋을 것이다. 會計實務上 必要로 하는 責任은 이러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會計의 次元에서 滬過하는 것으로 된 Accounting responsibility의 義務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會計原則의 設定에 있어서는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明確히 認識하고 그것을 Accountable한 것으로 하여 企業이 義務를 스스로 認定한다고 하는 態度를 要請해야 할 것이다. 즉, 企業은 그 會計處理를 行함에 있어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社會的 合意를 尊重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러한 內容을 會計原則의 一般原則에 함께 담아 넣을 必要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社會的 責任의 一般原則하에서 社會的 不利益을 排除하는 原則과 社會的 貢獻의 原則를 導入하여 社會的 費用 및 社會的 效益에 대한 測定을 해야 한다.¹⁸⁾ 이 事實은 社會的 責任을 會計公準으로 하여 設定한다고 하는 基礎的인 態度를 企業行動에 대한 社會的 要請에 의해서도 形成해야 할 것을 意味하고 있다.

V. 社會的 責任과 會計의 役割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認識狀況은 流動的이고 明確한 法的責任이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贊反兩論이 存在할 수 있다. 또 그 流動的 狀況은 社會的 性格에 의해 基本的으로 影響받게 되므로 美國에서 社會的 責任이라고 認定된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바로 理解된다고는 速斷하기 어렵고, 같은 나라에서도 時代나 環境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會計責任을 認知함에 있어서는 항상 曖昧함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曖昧한 正義를 會計的 認識의 基礎에 놓는 것은 不可하다고 하는 主張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社會를 선택하는가에 대하여는 國民의 合意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國民의 時代的 思潮에 의하여 스스로 一定한 內容을 갖게 된다. 따라서 “曖昧함”의 정도에도 一定한 幅이豫想될 것이고 最小한 이것 만큼의 것은 社會를 위해서 企業이 承認하기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社會通念과 같은 것이 여러가지 具體的인 경우와 社會的인 論議 中에서 생겨나게 마련이다.

法的으로 強制되는 企業責任은 最低限의 要請이고 다시 基底에는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한 경우 傳統的으로 道德的인 價值判斷과 新しい 革新的인 價值判斷과의 사이에는 쉽게 定着이 되지 않는 狀況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國

註18) 中村一彦, 會計理論 の 基礎, 同文館, 1974. p.195.

家 또는 社會를 選擇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國民의 合意가 成立하면 自然히 무엇이 Accountable인가에 대한 定着도 意外로 쉽게 얻어지지 않을가도 생각된다.

그것에 대하여 國際的인 影響도 오늘날에는 매우 큰 役割을 하고 있다. 民主政治體制를 取하고, 經濟的 民主主義를 基礎를 하고, 自由主義 陣營에서의 國際的 連帶를 推進하고 있는 경우 美國에 있어서와 같이 Public accountability의 認識과 企業責任에 대하여 影響을 미칠것이라고 하는 것은 充分히豫想되는 일이다. 이 사실은 “企業會計原則”의 成立의 경위와 그 후의 發展을 보아도 容易하게 풀이되는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다시 또 國際會計基準의 設定에 의해 各國의 會計實務를 可能한限 調整하려고 하는 活動이 이미 着實히 행해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國際的 影響의豫想은 반드시 無理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企業責任面에 있어서도 그 認識內容面에 따라 國際的 社會가 갖는 隔差를 是正하는 것이 國際的 企業으로서 그 犯罪 防止를 위해서도 강하게 要請되어야 할 것이다. 公害의 流出, 資源의 收奪, 社會福祉의 破壞, 失業의 輸出 등의 國際的 摩擦의 原因에 대하여 加害企業은 國際的으로 責任을 갖고 그러한 原因을 除去하는 데 責任을 지녀야 한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은 曖昧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曖昧하게 하려고 하는 企業의 作用에 의해 曖昧하게 된다고 하는 비꼬는 見解도 成立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國際的으로 점점 그 維持가 困難하게 된다. 이때 International accountability의 認識^[19]을 확립하는 일이 經濟의 國際化의 進展속에서 점점 강하게 要請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責任의 社會的 基礎는 이러한 國際的 連帶社會속에서도 구하지 않을면 안된다. 國際的 連帶와 企業活動의 國際化는 今後의 世界的 動向이므로 責任의 論議도 당연히 이러한 國際的 交流속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OECD에 의한『多國籍 企業의 行動指針』에서는 그『情報公開』의 要請에 있어서 多國의 企業活動의 情報公示를 구하고 國際的 責任을 確認하는데 있어서 첫번째의 채찍을 들고 있듯이 問題는 이미 現實化 되고 있다.

VI. 結論

1. 示唆點

註19) 溝口一雄, 會計國際化的研究, 1978. pp.108-121, pp.119-121.

傳統的으로 企業들은 利益을 極大化하려는 個別經濟의 單位였다. 企業의 이러한 經營哲學은 社會에 大量의 豐饒로움과 便宜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公害問題와 不良商品, 虛偽廣告 및 過大包裝등과 같은 大量의 社會問題를 일으켰다. 따라서 從來 利益極大化를 위한 企業의 行動은 이제 우리 社會에 고마움의 存在라기 보다는 社會의 問題兒로서 批判의 소리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批判의 소리때문에 企業의 社會的 責任遂行과 이에 대한 會計報告의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다.

企業도 長期的인 眼目에서 不合理한 經濟行爲에 의한 利益極大化라는 哲學이 企業에 不利하다는 것을 反省하여 企業의 社會的 責任問題를 自覺하여야 한다. 이러한反省과 自覺에 의하여 企業의 會計도 從來 企業活動을 識別하고 測定 및 傳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企業의 利害關係者들에게 利害調整과 社會的貢獻度 내지 社會正義를 實現하는데 그 目的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企業社會會計 生成의 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企業社會會計는 企業活動을 社會的인 觀點에서 測定 및 報告하고 評價하는 問題를 다루는 것으로 說明할 수 있다. 이러한 企業社會會計의 性格을 一般會計原則에 비추어서 定義한다면 社會的 觀點에서 企業의 利害關係者인 會計情報利用者가 合理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有用한 會計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會計責任을 論議할 때 社會的 基礎에 대한 認識을 研究하는 것은 매우 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2. 結 言

오늘날 會計는 從來의 企業會計의 機能에서 벗어나 社會的 機能과 役割을 檢討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社會的 資源의 效率的 配分이라는 社會的 役割을 다하기 위하여 傳統的 會計制度를 提供하는 財務的情報외에 企業이 社會에 關聯된 活動에 대한 會計的 測定인 社會的 成果에 속하는 費用이나 收益에 관한 情報가 社會責任會計 制度를 통하여 企業內外의 情報利用者에게 有用하게 傳達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企業이 從來에는 자기의 利益만을 追求하였으나 이제는 社會의 利益을 위하여 活動하도록 誘導하고, 企業이 社會를 포함한 모든 利害關係者에게 會計的情報를 正確하게 傳達해야 한다는 會計의 目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論文에서는 現代會計의 新로운 分野로 脚光을 받기 시작한 社會責任會計의 立場에서 社會的 責任의 意味와 背景, 會計次元에 의한 責任의 認識, 責任問題와 會計原則, 그리고 社會的 責任과 會計의 役割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따라서 本 論文은 새로운 會計制度의 提示는 아니며, 다만 社會責任會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社會的 責任會計의 定着과 現實에 있어서 基礎가 될 理論體系를 開發하기 위해 앞으로 研究, 檢討되어야 할 課題로서는 企業의 社會的 成果에 대한 明確한 分類, 新로운 測定技法의 開發과 妥當性 檢討,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의 認識이나 社會責任會計가 定着化 될 수 있는 社會的 분위기 造成, 公示模型의 開發, 社會會計情報가 諸利用者에게 미치는 影響, 責任會計가 提供하는 情報의 檢證이나 認證, 株主 및 債權者, 從業員, 一般大衆, 地域住民, 國家 등에 대하여 有用한 情報提供을 할 수 있는 多樣한 研究가 必要하다. 또한 그 理論을 適用하는데는 問題點이 따르겠지만 情報의 重要性이 날로 높아지는 現實속에서 傳統的인 會計만을 主張할 수는 없다. 따라서 社會責任會計의 實現이 가능하도록 많은 學者 또는 專門機關에서 새로운 會計의 領域인 社會責任會計에 많은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1. 李義俊：企業社會會計論，三英社，1983。
2. 南相牛：會計理論，日新社，1981。
3. 三逸會計法人，會計監查論，法文社，1981。
4. 宋梓・鄭鍾岩，會計監查，法文社，1981。
5. 劉世煥：原價會計，博英社，1980。
6. 李正浩：現代會計理論，經文社，1981。
7. 趙益淳：現代會計學，博英社，1981。
8. 玄點休：經營分析，博英社，1981。
9. 吉田實：社會責任-會計學的考察，國元書房，1978。
10. 黑澤清：會計と社會，中央經濟社，1980。
11. 武田隆二：情報會計論，中央經濟社，1982。
12. Robert Albanese, Managing Toward 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 Richard D. Irwin, Inc., 3rd., 1981.
13. R. Hay and E. Gray, Soci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March 1974.
14. Howard R. Bowen, Soci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man, New York, Harper, 1953.
15. K. Davis and R.L. Blomstrom, Business and Society, Environment and responsibility, McGraw-Hill Co., 1975.
16. Archie B. Carrall, Social Responsibility as an objective of Business, Evolving Toward a Model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in Business Policy and Strategic Management, McGraw-Hill Co., 1980.